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검사안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여야 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화학제품센터 -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업무 안내

(2024.02.29.)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 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3호 및 제 4조, 제 8조, 제 9조, 제 10조 1항 및 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검사기간	품목별 검사수수료	검사 및 접수 문의
검사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 (단, 초 7일, 문신용염료 28일, 세탁세제/섬유유 연제 생분해도 시 험 진행시 40일, 워셔액 30일, 부동액 약 90 일)	4~ 6 페이지 참조	[접수 문의] 고객지원센터 김미나 책임연구원 031)343-8887 최호승 연구원 031)343-8834
		[시험검사 관련 문의] 화학제품센터 - 전 품목 (워셔액/부동액 외) 이응선 주임연구원 031)428-3857 이진솔 연구원 031)428-3878 -워셔액/부동액 최다희 연구원 031)428-3848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43개 품목)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코팅제품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여가용품 관리제품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3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



4 | 시험 · 검사용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②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자등록증

2. 해당 시 제출서류

- ① (갱신 신청 시) 기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및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② (어린이보호포장 용기를 사용한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성적서 및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신청서
- ③ (OEM 해당 시) 위탁계약서 사본 및 위탁 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고압가스 제품인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설계단계검사 합격증 또는 KC 마크 사본

3. 재질이 다른 용기를 추가할 경우 용기추가검사 신청서

단, 용기추가시험은 대표제품과 제형이 같은 경우 신청 가능함

4. 제출서류 다운로드 안내

- ① KTC 홈페이지 접속 (<http://www.ktc.re.kr>)
- ② 왼쪽 상단 고객센터 탭 -> 신청서 양식 클릭
- ③ 항목9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바로가기 클릭
- ④ 게시글 확인

5. 제출방법

- ① 방문접수 : 아래 주소와 동일
- ② 우편접수 : (15809)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고객지원센터
☎ 031-343-8887, 031-343-8834

5 | 검사수수료

분류		품목	수수료 [단위:원]
공통	용기시험	겉모양	10,000
		중량 및 용량	10,000
		용기강도 (해당 시)	8,000
		용기누수 (해당 시)	8,000
어린이보호포장관련검사(해당 시)		pH	10,000
		동점도	60,000
세정제품	세정제	염산 또는 황산,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함유한 제품	420,000 (외부용의경우, 370,000)
		그 외 제품	370,000 (외부용의경우, 320,000)
	제거제	염산 또는 황산,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함유한 제품	300,000
		그 외 제품	250,000
세탁제품	세탁세제	캡슐형 세탁세제	1,250,000
		그 외 제품	1,050,000
	표백제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함유한 제품	100,000
		과산화수소 포함 제품	100,000
		그 외 제품	50,000
	섬유유연제	분사형	710,000
		비분사형	810,000
생분해도(계면활성제 함유시)		1,000,000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일반용(분사형)	350,000
		그외제품	320,000
	특수목적코팅제	일반용(정전기방지제)	470,000
		그 외 제품	370,000
	윤활제	윤활제	400,000
	녹 방지제	녹 방지제	370,000
다림질보조제	다림질보조제	150,000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일반용(분사형)	400,000
		일반용(분사형, PVC 주성분)	450,000
		일반용(비분사형)	430,000
		일반용(비분사형, PVC 주성분)	480,000
		순간·강력용(분사형)	400,000
		순간·강력용 (분사형,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450,000
		순간·강력용(비분사형)	280,000
		순간·강력용 (비분사형,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380,000
	접합제	접합제	370,000

분류		품목	수수료 [단위:원]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분사형	380,000	
		비분사형	200,000	
	탈취제	분사형(액상)	300,000	
		분사형(액상 외)	250,000	
		비분사형(액상)	310,000	
		비분사형(액상 외)	260,000	
염색·도색제품	물체염색제	물체염색제	130,000	
	물체도색제	구리 함유 제품	160,000	
		그 외 제품	130,000	
	자동차용 워셔액	일반용	1,723,000	
		발수성용	1,923,000	
	부동액	농축형(에틸렌글리콜)	3,443,000	
		농축형(프로필렌글리콜)	3,243,000	
희석형(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3,193,000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 및 토너	인쇄용 잉크 및 토너	80,000	
	인주	인주	60,000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340,000	
		그 외 제품	240,000	
	문신용 염료	문신용염료(무균시험포함)	940,000	
살균제품	살균제	일반용	420,000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500,000	
		칫솔·허크리너 살균용	500,000	
	살조제	액상	210,000	
		액상외	130,000	
구제제품	기피제	쌀벌레·좀벌레용	130,000	
		날벌레용	160,000	
보존·보존처리제	목재용 보존제	목재용 보존제	200,000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필터형 보존처리제품(해당 성분 + 전처리비 1,000,000)	이산화티타늄	100,000
			이산화규소	100,000
			구리	50,000
			산화아연	50,000
			질산은	100,000
			아연 피리싸이온	500,000
			옥타데실디메틸(3-트리하이드록시실일프로필)암모늄 클로라이드(OTPA)	200,000

분류		품목	수수료 [단위:원]
기타	초	발광용	30,000
		방향용(액체형)	240,000
		방향용(액체형 외)	190,000
	습기제거제	주 원료 실리카겔인 제품	280,000
		그 외 제품	200,000
	인공눈스프레이	분사형	80,000
공연용포그액	공연용 포그액	160,000	

6 최신고시 개정사항 안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안내

(환경부 고시 제2023-163호, 2023.07.06., 세부내용 개정고시 참조)

1.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강화

-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등 4개 품목 추가
-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신규 품목	용도
마감제	목재용
경화제	가죽용
경화촉진제	접착제용
운동용품	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2. 기존 관리품목의 신규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품목	신규 용도
세정제	일반용(필터용)
제거제	섬유 얼룩제거용, 페인트제거용
광택코팅제	금속장신구용
특수목적코팅제	가죽연화용
살균제	일반용(필터용), 전기분해형 살균기용(일반물체용, 물걸레 청소기용, 변기 수조용)

3. '용기 및 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신고방법 개선

- 식품 오인 용기, 포장 및 겉모양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용기·포장, 겉모양이 식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되지 않아야 하는 규정 마련
 - 2024년 1월 1일 이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